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905
----------	-------

제안연월일 : 2026. 3.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14205	송재봉의원	2025.11.13.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3.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6.3.10.)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 폐기)
	2214227	오세희의원	2025.11.13.	
	2214683	김상훈의원	2025.11.28.	

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6. 3. 10.)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 3. 12.)에서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기존 다자·자유무역 중심의 통상질서에서 벗어나 최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각 국이 보다 적극적인 통상조치를 취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외국통상조치 시행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겪을 부정적 영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통상조약 등의 이행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통상변화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에 국한되어 있는 지원수단을 보완하여 판로개척 지원사업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외국의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통상조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등).
- 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신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를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로 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를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로 한다.

1의2. “외국통상조치”란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

- 통상 관련 조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를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통망 구축 및 홍보·판매 지원

2.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제2항제2호다목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를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 ⑥ (생략)

<신설>

제11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그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 (실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판로 개척 지원)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통망 구축 및 홍보
 - 판매 지원
2.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p>가.·나. (생략)</p> <p>다. <u>통상조약 등의 이행에</u> 따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로 인하여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p> <p>라. (생략)</p> <p>③·④ (생략)</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u>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u> <u>외국통상조치에</u>----- ----- ----- -----</p> <p>라.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	--